

오산시 자치법규안 예고

「오산시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안」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 및 「오산시의회 회의 규칙」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23년 10월 17일

오산시의회의장

오산시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안 (전예슬 의원 발의)

1. 제안이유

- 의회의 정책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정책토론회 등의 개최 수요가 발생함에 따라, 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를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가.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에 대해 규정함. (안 제1조 및 제2조)
- 나. 토론회 등의 운영원칙 및 신청절차 등을 규정함. (안 제3조 및 제4조)
- 다. 토론회 지원 및 관리에 대해 규정함. (안 제5조)
- 라. 토론회 공개원칙 등을 규정함. (안 제6조)
- 마. 토론회 결과 반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. (안 제8조)

3. 조례안 : 붙임

4. 의견제출

- 제출기일 : 2023년 10월 23일까지
- 제출방법 : 서면, 우편, 오산시의회 홈페이지 등
- 제출서식 :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
(오산시의회 홈페이지>알림마당>입법예고>공지)
- 기재내용 : 주소, 성명, 연락처번호, 의견
- 제출기관 : 오산시의회(전문위원실)
 - 우편번호 : 18132
 - 주 소 : 오산시 성호대로 141(오산동, 오산시의회)
 - 전 화 : 031)8036-8032
 - 전자메일 : kbh0810@korea.kr

오산시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오산시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관리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토론회 등”이란 현안사항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오산시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, 발표회, 심포지엄, 포럼, 간담회 등 각종 의견 청취 행위를 말한다. 다만, 「오산시의회 회의 규칙」 제56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다.
2. “현안사항”이란 오산시의회의 주요 정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 주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을 말한다.

제3조(운영원칙) ① 오산시의회 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은 토론회 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주민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.

② 의장은 토론회 등을 통해 수립된 주민의견이 의정활동과 입법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의장은 토론회 등의 참가자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,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토론회 등을 운영하여야 한다.

제4조(신청 및 승인) ① 오산시의회 의원(이하 “의원”이라 한다)이 토론회 등

의 개최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의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개최일로부터 2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의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, 불승인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.

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토론회 등 개최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일시, 장소, 안건, 의견 제출 및 참가 방법 등을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오산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.

제5조(지원 및 관리) ① 토론회 등에 대한 지원은 의회사무과에서 하고, 토론회 등의 지원계획 수립, 예산편성 및 집행 등을 관리한다.

② 의회사무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·관리하여야 한다.

1. 일시 및 장소
2. 발제자 및 토론자 등 참석자 명단
3. 토론사항 및 진행사항
4. 발언자의 발언 요지
5. 그 밖에 토론회 등 진행에 관한 사항

제6조(진행) ① 사회자는 토론회 등을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,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 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② 토론회 등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.

제7조(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) 토론회 등을 주최하는 의원은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공무원, 전문가,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8조(결과반영 등) ① 토론회 등을 주최한 의원은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안건 심사 또는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.

② 토론회 등을 주최한 의원은 토론회 등에서 논의된 사항을 제5조제2항에 따른 회의록과 함께 개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토론회 등에서 논의된 사항과 회의록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. 다만 토론회 등이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제9조(실비보상) 토론회 등의 발표자, 토론자, 자료제출자,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토론회 등에 참석한 경우 지급하지 아니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 서식]

토론회 등 개최 승인 신청서

「오산시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.

행 사 명			
목 적			
일시/장소		참석인원	
기대효과			
<input type="checkbox"/> 내 용			
붙임 : 토론회 등 개최 계획서 1부			

년 월 일

신청인 : ○ ○ ○ 의원 (인)

오산시의회의장 귀하

[별지 제2호 서식]

토론회 등 개최 결과 보고

일시 및 장소	
발제자 및 토론자 등 참석자 명단	
토론사항 및 진행사항	
발언자의 발언요지	
그 밖에 진행에 관한 사항	
비 고	
붙임 : 회의록 1부.	